
'19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

2019.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1.	2019년 제3차 G20반부패실무그룹회의 및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7
붙임 1	회의 일정.....	27
붙임 2	발표 자료	31
붙임 3	회의 사진.....	38

□ 회의 개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9. 10. 7.(월)~9.(수)/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10.9(수) G20 반부패실무그룹 자산회복 관련 부대행사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9. 10. 8.(화)~10.(목)/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10.8.(화)는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합동 회의(Joint session)

- 참석자 : G20 회원국,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30여 명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주요 결과

- 지난 5월 개최된 제2차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에서 고위급 원칙 및 정상선언문 협의를 위해 논의가 순연되었던 의제들이 이번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되었음.

- 주요 논의 의제 : 2019년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 초안, 이해 충돌방지 우수사례 가이드 모음집 초안, 경제범죄 및 부패 관련 자산회복에 대한 국제적 협력 초안 등

- 우리나라는 G20/OECD 합동세션 계기에 우리나라의 부패 및 공익 침해 분야 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하며 동 제도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익 침해 여부에 따라 민간영역에 대한 고발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함.

- 반부패실무그룹 본 회의 및 부대행사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던 경제사범 소환 및 자산회복과 관련하여 국제적 사범공조 (MLA)와 정보 공개(open data) 시스템의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
- ‘20년도 제1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20년 2.3-6(4일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는 6월 15-17일간, 제3차 회의는 10월 20-21일 개최 후 10월 22일 반부패 장관회의 개최 예정임.(잠정 일정)
- 반부패실무그룹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① 민영화에 대한 청렴 제고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 ② 국가적 반부패 정책 또는 전략 개발 및 이행, ③ 기술을 활용한 청렴도 증진 방안
- 또한 G20 반부패실무그룹 창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0년에 반부패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반부패 법 집행관련 부처(anti-corruption laws enforcers)에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바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 대표단 활동

- 대표단은 내년도 G20 반부패실무그룹 의장국인 사우디 대표단과 별도 면담 통해 다음과 같은 의제를 논의함.
- 사우디는 반부패실무그룹 창설 10주년 계기 반부패 장관회의 개최 계획에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한바, G20 반부패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우리 대표단이 내년도 회의 일정 및 공동의장국 선정 등 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문의한바 사우디측은 2020년 2월, 6월, 10월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공동의장국 선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함. 다만 3차회의에 대해서는 OECD 또는 UNODC와의 합동세션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 우리 대표단은 내년도 제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최 예정인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회의 아젠다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우디는 공동의장국과 협의하여 회신 주겠다고 답변함.
- 또한 우리 대표단은 내년도 반부패실무그룹 주요 의제에 민관협력 파트너십, 기술과 관련한 부패 방지 이슈 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언급함.
- 우리 대표단은 ‘이해충돌방지 우수사례 가이드 모음집’ 초안에 한국의 우수사례가 1건만 언급되어 있었던 것에 추가로 3건의 우수사례(이해충돌 상황 방지를 위한 한국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관련 제도 소개)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주 작성자인 UNODC 측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보다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모음집이 침묵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친 후 발표될 예정임.
- 우리 대표단은 G20과 OECD 합동세션 계기에 제19차 국제반부패 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바, 아르헨티나, 러시아 대표 등이 우리 대표단을 접촉해와 동 회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참석의사를 표명함.

- 대표단은 Ms. Carissa Munro, OECD 공공행정국 정책분석가와 별도 면담을 통하여 '19.11.3-4간 OECD 본부에서 열릴 청렴작업반 (SPIO)에서 우리나라의 발표 및 논의 참여에 대해 의견을 나눈바,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19 제2차 청렴작업반 보고서에 후보 예정임.

□ 관찰 및 평가

- 이번 실무그룹회의는 정상회의 후 개최된 회의로서 고위급원칙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개최된바 상대적으로 화목한 분위기로 진행됨.
 - G20 리더십이 아르헨티나-일본-사우디 트로이카(3개국) 리더십에서 일본-사우디-이탈리아 트로이카 리더십으로 전환됨에 따라, 반부패 실무그룹내 이탈리아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이해충돌방지 우수사례 가이드 모음집 수정안에 우리측의 요청안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상황이 회의 전부터 반복됨에 따라 우리측이 의장국과 UNODC에 항의를 제기하는 등 의사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 또한 실무그룹은 최근 몇 년간 G20 아젠다 논의 시간을 할애하여 C20 및 B20에게 별도 발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금번 회의에 B20 대표가 불참한바 회원국들은 B20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에 의문을 표하는 등 향후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찰됨.

[2019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 2019 G20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

- 의장국(일본)은 회의 개최 1주일 전 금년도 반부패실무그룹 이행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를 요청함.
- 우리 대표단은 개별 문항 중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이 영역별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미 민간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으므로 ACWG 이행보고서에서 언급된 협력 방안이 부패 방지에 대한 협력방안임을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유엔반부패협약(UNCAC) 외에 국제 또는 역내 반부패 평가 매커니즘을 시행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는지 묻는 문항에서, 대다수의 G20 회원국들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앞서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다수 언급되고 있으므로 OECD 뇌물방지협약 또한 질문 내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함.
- 의장국은 이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상기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 회람 후 11월중 최종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임을 알림.

□ 부패 측정(measures of corruption)

- (이탈리아) 측정(measurement)이란 효율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평가활동이라고 언급하면서 ‘인식(perception)’에만 베이스를 둔 부패 측정은 해당 국가의 신뢰도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반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함.

- 올바른 부패 측정을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활용하여 ‘유효한(valid)’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데이터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에 대한 근거로 2018 OECD 뇌물방지협약 평가보고서와 2019 GRECO 연간보고서에서 이탈리아의 순위가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소개하면서 CPI 평가에서 이탈리아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반해 실제 부패방지 제도 및 처벌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예시로 제시함.
- 평가에 사용될 객관적 지표로서 부패범죄 처벌 횟수, 기소 건수, 재산몰수, 자산 압류 등 사법적 데이터와 더불어 경험에 근거한 데이터와 분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 (UNODC) 완벽하게 객관적인 부패 측정 지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간 부패 순위 평가 또한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2011년도 발칸반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CPI 순위와 실제 부패 발생률에 크게 차이가 있을 소개함.
 - * 예: 크로아티아와 코소보의 부패 발생률은 각각 11.2%, 11.1%로 비슷한 반면, CPI 순위는 크로아티아가 65위, 코소보가 112위로 크게 차이남.
- (OECD)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된 데이터, △ OECD 해외뇌물 관련 보고서, △ OECD 정부 평가보고서, △ OECD 청렴 작업반에서 마련한 공공청렴 권고안 및 권고안 이행 점검을 위해 개발된 공공청렴지표 등 다양한 자료 및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바,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객관성 있는 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함.
- (러시아) 인식은 인식일 뿐이며 더욱 명확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G20 회원국들이 반부패실무그룹을 통해

10년간 도출해낸 성과가 부패 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이와 관련하여,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ACA)가 G20 반부패실무그룹 성과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아르헨티나) UNODC의 자료 중 인식 지수와 실제 부패발생률 차이를 보여주는 도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언급함. 또한 새롭게 개발될 지표는 국가별 순위와 상관없이 지표 자체를 활용하여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지표(index)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함.

□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 Civil 20은 2013년부터 G20 회의의 공식 파트너로 역할해오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G20과의 효율적 협력을 위한 원칙(C20 Principle*)을 마련하였음을 소개하면서 G20 ACWG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안함.
- ① G20 ACWG 모든 세션에 참가하기를 희망, ② ACWG 아젠다를 공유하기를 희망(금년도 의장국인 일본은 C20에게 아젠다를 공유 해주었는데, 내년도 의장국인 사우디에게도 협력을 요청), ③ G20 ACWG 웹사이트 운영을 요청함.
- * 주요 내용은 글로벌화, 투명성, 독립성, 협업, 인권 및 성평등, 포괄성, 지속성, 예측가능성 등 8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함.
- C20은 작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중이며, G20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단체에 오픈된 플랫폼임을 소개함.

- 이에 독일은 독일정부가 자국 사이트에 G20 반부패실무그룹 활동에 대한 모든 문서를 업로드 하고 있는바 문서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중임을 소개함. (bmjv.de)
- 한편, Business 20 대표는 동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설명을 요청한바 의장국은 B20과의 연락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이해충돌방지

- UNODC는 OECD, World Bank와 협력하여 이해충돌 우수사례 가이드 모음집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장국을 통하여 회의 개최 전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함.
- 초안에서는 전체 내용 중 ‘선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에만 우리나라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만이 소개된바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함.

< 우리측이 제시한 내용 추가 및 수정 요청 내용 >

[공직자 채용 및 임명과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 소개] - 신규 삽입

한국 :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Restriction on public officials in Korea: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is prohibited from unduly influencing his/her agency, institutions under its jurisdiction, or an affiliated institution to hire their family member.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is prohibited from improperly influencing his/her agency to hire his/her family member.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directing, supervision, regulating, or supporting an affiliated institution is prohibited from improperly influencing the affiliated agency to hire his/her family member.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Presidential Decree No. 28587, Jan.16.2018)

[선물 수수와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청탁금지법) 소개] - 내용 수정

선물에 대한 규제는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에도 언급되어 있으나, 한국정부는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및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상기 언급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할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 뇌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뇌물죄와는 달리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다. 또한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사회 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을 내포하므로 금지한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f Korea

The regulation on gift is covered i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of 2003.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also enac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16 to eradicate a culture of improper offering and solicitation of entertainment.

According to this Act, no public official (and his/her spouse)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money, goods, etc. exceeding a value of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ny connection to his/her duties and regardless of any pretext such as a donation, sponsorship, or gift, etc. No public official (and his/her spous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money, goods, etc.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above, regardless of whether the money or goods are given as part of any quid pro quo. This Act regulates not only public official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in providing the prohibited amount of money or goods, etc.

Any public official will be subject to a criminal punishment for receiving any money, goods, etc. exceeding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an offer and his/her duties, and the motive for such an offer. Under the Criminal Act, the offense related to bribery requires proof that a benefit is given because of the official duty concerned and is intended to reward the recipient for the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a duty. Loopholes therefore arose given that the causality was hard to prove.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which is to root out hospitality and entertainment practices which may lead the public to suspect the impartiality of official acts, the above provisions therefore forbid the offering and solicitation of gifts as described abov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given in connection with the duty of the public official.

The Act also addresses the fact that money, goods, etc. exceeding a value of 1 million won - which is deemed a significant under social norms - could be interpreted as connected to the potential and future duties of the recipi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ct No. 13278. 27. Mar. 2015)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우리나라 제도 소개] - 신규 삽입

한국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개시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재직했던 법인, 단체와 그 업무 내용, 관리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공직자 윤리법 제4장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련성 있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In Kore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hall report to their agency head their private sector activities for the three year prior to their appointment or commencement in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she is appointed, or the term of office starts. Private sector activities include details of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for which as public official worked and their work there, details of business or profit-seeking activities which a public official managed or operated.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Presidential Decree No. 28587, Jan. 16. 2018). Further, according to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no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person subject to employment screening) shall be employ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time of his/her retirement by any of the institution closely relevant to the duties of the department or agency with which he/she has been affiliated for five years before his/her retirement. (Public Service Ethics Act, Act No. 14839, 26. Jul. 2017)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와 조언 제공과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 소개] - 신규 삽입

한국 :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교육, 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In Korea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signates a Code of Conduct Officer at the agency. The Code of Conduct Officer provides education and counseling to public officials in his/her agency on the Code of Conduct and Conflicts of Interest, check and assesses their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Decree, receives reports and conducts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and handles any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Conduct.

▶ 모음집 초안에 대한 국가별 발언

- (캐나다) 동 모음집은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국제기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함. 내년도 사우디 의장국 체제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함.
- (IMF) 동 모음집을 IMF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회원국들이 좋은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임.
- (아르헨티나) 법이나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해충돌 상황이 언제나 발생함. 이러한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등 우수사례가 더욱 다양하게 언급되었으면 함.
- (한국) 동 문서는 작년 반부패실무그룹이 도출한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의 후속조치로서, 원론적인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논의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함. 동 모음집은 이해충돌에 대한 기초적 이해뿐만 아니라 상황별 대응방안 예시를 풍부하게 담고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 텍스트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대부분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있으나, 선물 등 부정 수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제재한 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 중인바 향후 진행상황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우디아라비아) 동 문서에 더욱 많은 예시들이 언급되기를 바라며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로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OECD)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 주어서 선별에 어려움을 겪었음. 동 문서를 살아있는 문서로서 유지하기 위해 각 우수사례들의 진화와 발전 등을 추적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
- 의장은 회의 종료 후 곧바로 2주간 동 문서에 대한 침묵기간 (silence procedure)을 가지기를 희망하였으나, OECD측에서 브라질과 한국의 코멘트가 현재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나온 후 2주간의 시간을 갖기를 요청, 의장이 이를 수용함.

□ 실질 협력

- 중국은 부패관련 경제사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 인적사항 확인, △ 자금 계좌 정보, △ 관계자 증언 확보, △ 기타 필요 서류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자국의 감찰원(NCS, National Commission of Supervision)이 운영하고 있는 skynet* 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적 MLA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함.

* 중국은 skynet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2014-19년간 120여개국으로

부터 5,575명의 자금 횡령자들을 소환하였으며, 회복된 자산은 약 13.783bn 위안에 달함.

- 또한 연례 DoE(Denial of Entry)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G20 반부패 법집행 네트워크에 DoE 활동을 업데이트 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중국은 동 주제가 G20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내년도 주요 의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바, 캐나다가 찬성 의사를 표시함.

□ 부패 및 기타 경제 범죄

- OECD는 ‘심각한 경제 범죄 및 자산회복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초안을 공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파트 : 조세 회피, 자금 세탁, 부패 및 뇌물, 불법 거래 등과 연계된 경제사범 문제를 나열하며 MLA 등을 통해 자산회복과 범죄자 송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분석
- 두 번째 파트(현재 문제점) : 범죄자 송환 및 자산회복에 대한 국제법간 차이가 존재하며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불필요하게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 국제적 조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간 또는 기관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세 번째 파트(다음 단계) : 동 주제에 대해 UNCAC 제4조 이행을 다시 점검하며, 2018 G20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부패와 경제범죄의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을 더 심층적으로 시행하는 등 G20과의 협력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현재 한국의 법제, 협약 가입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협력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 향후 수정안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G20/OECD 합동세션

-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합동 세션을 마련하였으며 △ 인프라 개발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 △ 내부고발자 보호, △ 성(性)과 부패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함.

▶ 인프라 개발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

- G20은 금년도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작성한 ‘인프라 개발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 우수사례 모음집’을 소개함.
 - △ 공공조달 투명성 제고, △ 정보 공개, △ 이해충돌 관리 및 예방, △ 부패 인지 및 처벌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
 - 동 모음집은 인프라실무그룹(IWG)을 포함한 G20 전반의 인프라 부패 방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언급
- 중국은 2011년 뇌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소개하며, 해외 인프라사업에 대한 감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함.
 -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해외뇌물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며, 이는 해외뇌물 범죄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향후 관련 MLA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

한다고 설명함.

- 또한 해외뇌물에 대한 사례가 없다고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적으로 기업의 준법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라오스 철도건설 등 초국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는 동 합동세션이 G20 회원국에게는 20개국 이상의 다른 나라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이며,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함.
- 인프라 청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G20 인프라실무그룹과 협력하여 인프라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비록 금년에 인프라 실무그룹과의 합동세션이 불발되었으나 향후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OECD가 찬성 의견을 표함.
- 프랑스 대표는 본인이 인프라실무그룹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는 12월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인프라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는 바 반부패실무그룹에서 도출한 동 문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해 보겠다고 언급함.

▶ 내부고발자 보호

- 우리 대표단은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소개함.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공직자인지 민간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 대상 법률에 속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됨을 설명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보호뿐만 아니라 신고에 합당하는 보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내부고발 내용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신고자와 관련된 성별, 회사, 나이 등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 내부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
- OECD는 뇌물방지작업반에서도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자체 문서를 준비중이며, 금년 G20 반부패실무그룹이 도출한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이 좋은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영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G20과 OECD의 합동 세션이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는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션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OECD는 동 세션에서 언급된 내용이 뇌물방지작업반 권고안(recommendation)에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방지 작업반 회원들에게 G20 반부패실무그룹이 도출한 고위급 원칙을 공유함으로서 더욱 많은 국가에서 상기 내용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답변함.

▶ 성(性)과 부패

- UNODC는 성과 부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임을 언급하며, 지난 몇 차례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에 강한 점을 소개하였으나 금번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에 취약한 점을 소개함.

- 스페인은 금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성과 부패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이 매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동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사우디는 ‘20년 G20 회의 개최시 Woman 20을 함께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함.
-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동 이슈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질문만 가득하였으나, 올 한 해 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 것을 환영하며 내년도 의장국인 사우디가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 특히 정치 후원금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 이슈에는 주로 남성만 관여하게 되며 여성은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함. UNODC가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줄 것을 부언함.

□ 리야드 2020을 향하여 (2020년 의장국 사우디 발표)

- 2020년도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부패실무그룹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다음과 같이 공유함.
- ① 민영화에 대한 청렴 제고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 ② 국가적 반부패 정책 또는 전략 개발 및 이행, ③ 기술을 활용한 청렴도 증진 방안
- 또한 G20 반부패실무그룹 창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0년에 반부패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반부패 법 집행관련 부처(anticorruption laws enforcers)에서 참석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2020년 반부패실무그룹의 잠정적 일정은 제1차 회의 2월 3-6일간, 제2차 회의 6월 15-17일간, 제3차 회의 10월 20-21을 예상하고 있으며, 장관회의는 10월 22일로 계획 중이라고 언급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부대행사 : 자산회복에서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 세션1. 현존하는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 현존하는 자산회복과 자산 반환에 대한 국제 규범(유엔부패 방지협약, 아디스아바바 이니셔티브, 자산회복에 관한 글로벌 포럼(GFAR))이 가지는 함의와 국제규범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UNODC는 UNCAC 제5장 중 51조, 53조, 57조가 자산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과 공조의 정신을 잘 나태고 있으며, 국가간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당사자간의 대화, 동료 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관련 조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함.
- 스위스는 자산반환 및 회복에 대해 국가마다 다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통해 공통 접점을 찾아내어 국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중임을 설명함. 특히 부패로 인한 자산 손실은 저개발 국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아디스 아바바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 UNODC, 스위스가 함께 우수사례를 찾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임을 언급함.
- 미국은 GFAR의 10개 원칙을 소개하면서 파트너십, 상호이익, 이해관계자간의 조기 대화, 사례특화(case-specific) 접근, 시민사회의 감시, 부패자금의 반환이 다시 부패 자금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세션2. 자산반환 및 처분에서의 교훈

- 동 세션에서는 국제적인 자산 반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간 협력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케냐는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국내 부패 공무원의 자산을 반환하여 학교, 공원, 병원 등에 재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부패의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환수된 재산이 돌아갔음을 언급함.
-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재정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의 부패를 발견하고, 말레이시아,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공조하여 조기에 부패 자금을 발견하고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소개함.
- 스위스는 스위스 은행이 부패자금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하에 운영되도록 국내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2017년부터 GFAR 가입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함.
- 사우디는 내년도 G20 ACWG 의장국으로서 자산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10.22.(잠정) G20 반부패 장관회의 계기에 부대행사로써 자산회복 의제를 더욱 발전시켜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함.

□ 세션3.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을 위한 혁신적 접근

- 동 세션에서는 자산회복에 대한 공공 기관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소개하며 양측의 협력이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

- 아프리카지역 시민단체인 African Network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Justice는 시민사회가 회복한 자산을 투명하게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함.
- 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 Peru는 페루에서 관련 국내법 제정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리며 부패자금, 몰수 자산 반환과 관련한 법이 곧 시행될 예정임을 소개함.
- TI 프랑스는 부패로 몰수된 자산을 프랑스 정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투명하게 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입법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언급함.
- 자산회복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StAR(Stolen Asset Recovery)는 국가적 정보 공개 시스템(Open Source System)을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이에 사우디측은 G20 반부패실무그룹이 도출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나 실제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저장소 (archive) 등 창구를 일원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언함.

[2018 제3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 뇌물방지협약 및 2009년 권고안의 국가별 이행 평가

- (라트비아 3단계 이행 평가) 라트비아는 현재까지 9건의 해외뇌물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1건도 기소한 바 없으며(3건 수사 진행 중), 다수의 자금세탁범죄를 다루었으나 유죄율은 그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사무국은 라트비아 정부가 검찰총장에게 반복된 비판을 하는 등 검찰 업무에 정치적인 방해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해외뇌물 사건 탐지(detection)를 늘리고, 라트비아 은행이 라트비아법 상 자금세탁 방지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다만, 해외뇌물 등에 대한 벌금형 상한 증가, 자금세탁에 대한 입증수준 경감, 신속한 형사사법공조 대응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 금번 뇌물방지작업반에서 가장 집중한 의제이며, 이행점검국은 체코 및 멕시코
- (슬로베니아에 대한 OECD의 우려 표명) 슬로베니아 국회의원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국회 조사가 진행 중임.
 - 사무국은 이러한 슬로베니아 국회의 조치가 검찰 및 법원의 독립에 직접적인 압력과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수사와 기소의 독립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
 - (브라질에 대한 OECD의 우려 표명) 브라질 상원은 2019.6.26. 판사와 검사가 증거 불충분시에도 유죄 판결을 한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 외 금융정보분석기구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정보에 기초한 수사 중지, 국세청의 세금 범죄 외 사건에 대한 수사 금지, 법규 상 요구되는 추천 절차 없이 검찰총장 임명 등을 진행함.
 - 사무국은 상기 일련의 브라질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브라질 정부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고위 대표단(High Level Mission)을 파견할 것을 결정(구체적 시기는 추후 결정 예정)

-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새 형법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는바, 반부패 관련 법률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국제뇌물 및 법인 처벌이 충분할지 의문이 제기되었음.
- (터키) 터키는 3단계 이행평가에 따른 주요 권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고위급 현장 파견(High Level Mission)이 결의됨.
 - 터키는 2017.5월 권고사항 이행 서면보고 이후 진전이 없어, 수차례 서면 재보고, 언론보도 등 조치가 취해진 바 있음.
 - 법인의 책임 관련 법률체계상의 흠결은 1년내 서면으로 추가 보고토록 요청
 - 자연인의 책임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선결요건이 아닌 점, 에스토니아 법상 “권한 있는 대표” 등의 용어 명확화 등을 4단계 평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 해외뇌물사건 공유(Tour de Table)

-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일본, 멕시코 등에 대한 해외 뇌물사건 수사 및 공조 현황이 공유됨.
- 현재 일본의 뇌물사건으로 Matrix(사건부)에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일본 소재, 한국인 대표) 사건 관련, 일본은 동 사건이 한국에서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건이라며 Matrix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OECD는 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모두 한국인인 점을 감안, 일본의 삭제 요청을 수용함.

□ 우리나라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그리스의 최근 형법 등 개정사항 논의

*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그리스의 3단계 이행평가를 담당한 주 심사국임.

- 그간 논의 경과 : 그리스는 부패범죄 형량을 감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행(2019.7.1.)한 바, 지난 6월 뇌물방지작업반 회의시 OECD 는 그리스의 동 법개정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관련 우려 전달 및 상황개선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그리스 수상에게 발송
-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그리스에 대한 현장실사 참여(10월), 개정법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점검 평가 실시(12월) 예정
- 그리스는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자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전달된 이후, 2019.8월 뇌물공여 형량을 최대 8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함.
- 사무국은 상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개정 법률안 최종 입법 시 형법 등에 재변경이 생기므로 당초 12월에 예정 되어 있었던 추가적인 이행점검 평가 대신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Technical Mission*)을 실시하자고 제안(단, 10월 현장실사는 예정대로 진행)
- * Technical Mission : 협약 가입국이 협약 이행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이나, 추가 이행평가에 비하여 간소한 절차임.
- 한국과 아일랜드는 이와 같은 사무국의 의견에 동감하고, 이행 평가의 대상법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의 법제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는 이행평가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각 발언함.

□ 뇌물방지작업반 활동 계획

- 우리나라가 주심사국으로 참여중인 그리스에 대한 현장점검이 10.28.-29. 진행될 예정(이후 12월 뇌물방지작업반에서 이에 대한 기술적 논의 진행 예정)
- 우리나라 4단계 이행평가(2018.12월)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관련, 12월 뇌물방지작업반에서 이에 대해 구두 보고 예정임.
- 12월 회의에서 호주에 대한 4단계 평가 권고사항 이행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주심사국으로 참여하여 동 호주에 대한 점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10.7.(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08:30~09:00	등록
09:00~09:15	개회 • G20 공동의장(일본, 멕시코) 환영사 •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 의제 및 진행 내용 소개
09:15~10:15	세션 1. 이행보고서 초안 • 2019 이행보고서 초안 검토 및 논의
10:15~10:45	커피 브레이크
10:45~12:05	세션 2.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 B20과 C20 대표가 2018년 반부패 협력 관련 내용 소개
12:05~12:45	세션 3. 부패 측정 • 멕시코 • 이탈리아 • UNODC • OECD
12:45~14:15	점심 휴식
14:15~15:00	세션 4. 이해충돌 방지 • 이해충돌방지 우수사례 가이드에 대한 OECD와 World Bank의 업데이트 • 이해충돌방지 논의
15:00~15:30	세션 5. 조세기관의 반부패 전략 • 멕시코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6:35	세션 6. 실질적 협력 • 중국(투자이민 관련)
16:35~17:35	커피 브레이크
16:30~17:30	세션 7. 부패와 기타 경제 범죄 • 국제기구 • 인도
17:30~18:00	세션 8. 내부고발자 보호와 인프라 • 고위급원칙과 우수사례 모음집 후속조치 방안 논의
18:00~18:20	단체 사진

10.8.(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08:30~09:00	등록
09:00~10:30	G20/OECD 합동세션 1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30	G20/OECD 합동세션 2
12:30~14:00	점심 휴식
14:00~15:00	세션 9. 리야드 2020을 향하여 • 사우디아라비아(차기 G20 의장국)
15:00~15:30	세션 10. UNODC/UNCAC • 제8차 UNCAC 당사국 총회 • 제14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 의회
15:30~16:00	세션 11. 성과 부패 • 캐나다, UNODC
16:00~16:45	세션 13. 국제기구 발표 • OECD, UNODC, FATF, World Bank, IMF, ADB
16:45~18:00	향후 운영 방안 및 폐회

10.9.(수) G20 부대행사	
09:30~09:45	개 회
09:45~10:30	가이드라인/우수사례 발표 • 유엔반부패협약 제5장 Sophie Meingast,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Officer, UNODC • 아디스 아바바 이니셔티브 Walter Reithebuch, Senior Policy Advisor, Anti-Corruption and Asset Recovery,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Switzerland Wedo Atto, Commissioner, 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Ethiopia • 자산회복 글로벌 포럼 Kellen McClure, Anticorruption Advisor, Bureau of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nd Narcotics, State Department, United States
10:30~12:00	자산회복과 배분에 대한 교훈 • Tom Le Feuvre, Director, Global Market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 Jersey • Julius Muraya, Deputy Director, , Asset Recovery & Legal Support,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Kenya • Kyle Freeny, Trial Attorney, Money Laundering and Asset Recovery Section,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 Xavier-Baptiste Ruedin, Head Task Force Asset Recovery,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Law,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Elsa Gopala Krishnan, Financial Sector Specialist, StAR
12:00~13:30	점심 휴식
13:30~16:00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 • Ladidi Bara'atu Mohammed, Director, Asset Recovery and Management Unit, Ministry of Justice, Nigeria • David Ugolor, Executive Director, African Network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Justice • Oscar Solorzano, Country Manager for Peru, 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 • Sara Brimbeuf, Advocacy Officer,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16:00~16:40	마무리 발언 및 폐회

10.10.(목)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회의	
09:30~11:30	의제 8.a. 라트비아에 대한 3단계 평가보고서, 권고문, 요약보고서 및 보도자료 2차 검토
11:30~12:30	의제 12. 2009 뇌물방지 권고문 검토 - part 2
12:30~12:45	의제 8.e. 벨기에 3단계 후속조치 추가 서면 보고
12:45~13:00	의제 8.f. 그리스 3단계 후속조치 추가 구두 보고
13:00~14:30	점심 휴식
14:30~14:45	의제 8.g. 브라질 즉석 보고
14:45~15:00	의제 8.h. 폴란드 3단계 후속조치 추가 구두 보고
15:00~17:00	의제 8.d. 아일랜드 1단계 bis 보고서 2차 검토
17:00~17:15	의제 8.i. 에스토니아 3단계 후속조치 추가 서면 보고
17:15~17:30	의제 8.a. 라트비아에 대한 3단계 평가보고서, 권고문, 요약보고서 및 보도자료 2차 검토
17:30~17:45	의제 18. 모니터링 평가 일정
17:45~18:00	의제 19. 기타 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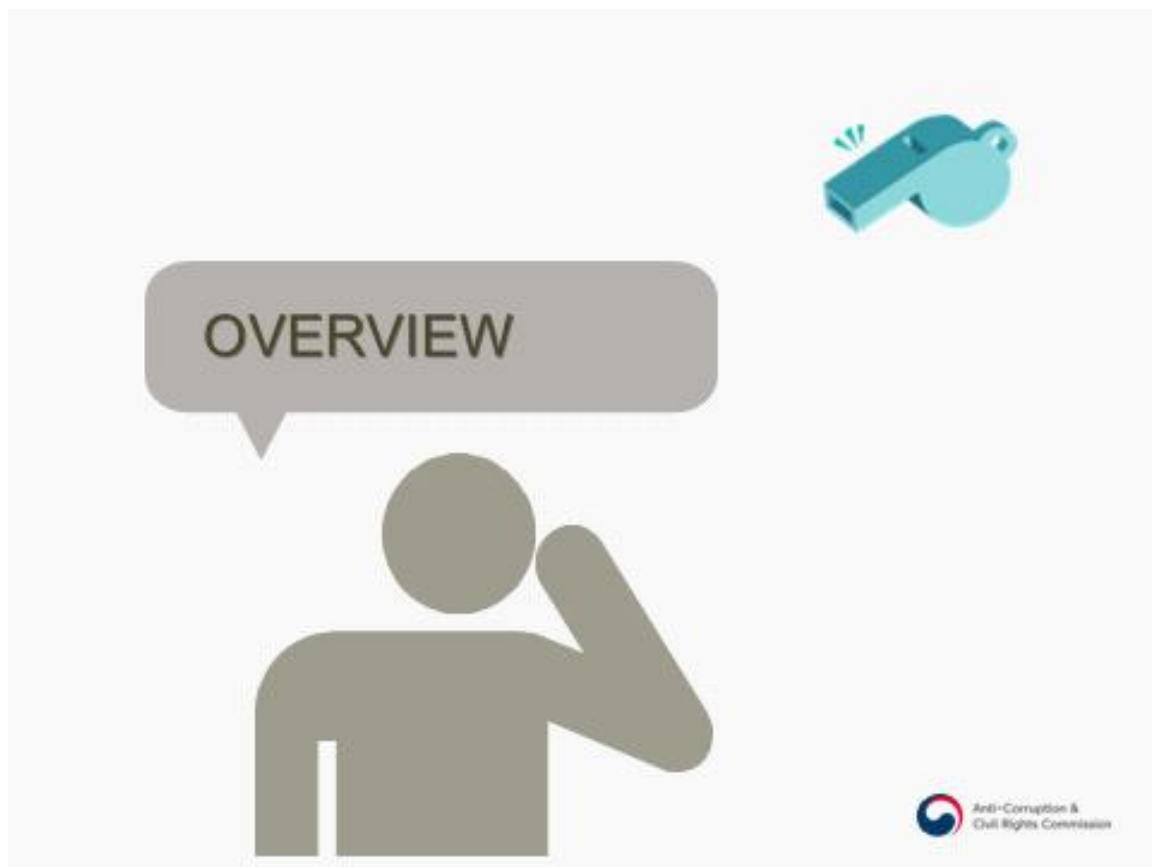
Republic of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 Reward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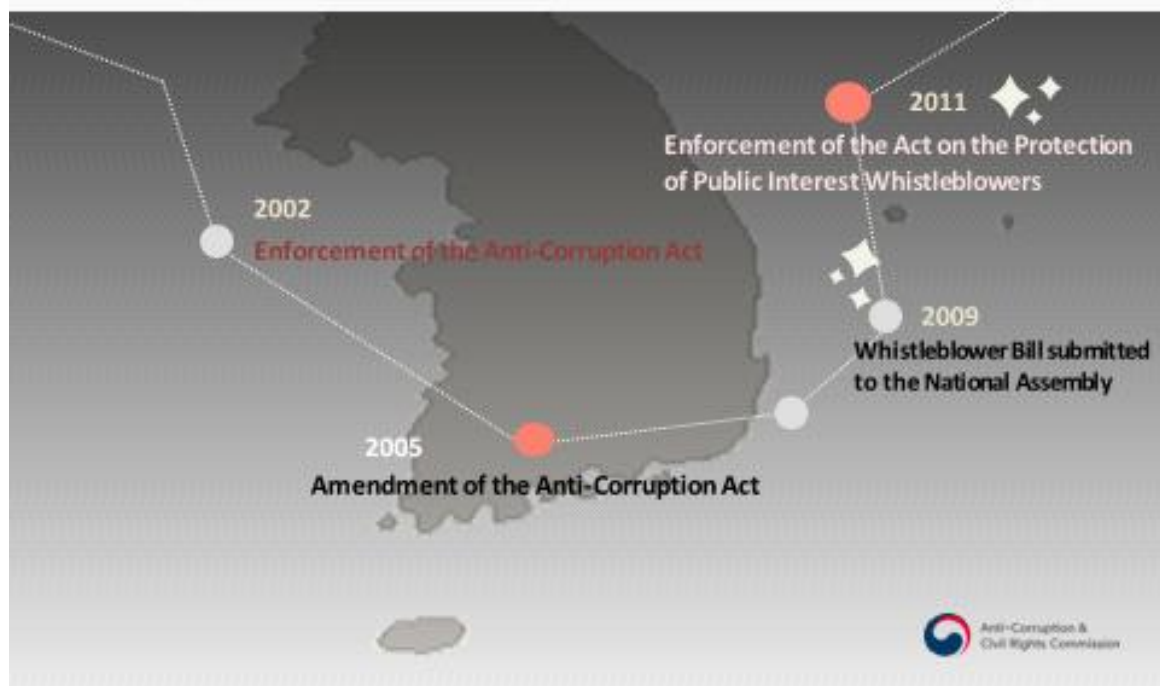
Contents

- | Overview
- ||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 ||| Achievements & Challenges





Progress of Korea's whistleblowing legislation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Reporting corruption vs. public interest violation

	Corruption	Public interest violation
Laws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 Operation of ACRC (Enforcement on Jan. 25, 2002)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Enforcement on Sep. 30, 2011)
Subjects	▪ Corruption related to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of duties ▪ Corruption related to contracts budget & properties of public agencies ▪ Forcing, recommending or suggesting the above acts	Violation of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 fair competition → Breaches of 284 laws
Reporting agencies	ACRC, investigative authorities, Board of Audit & Inspection, etc.	Companies, competent public agencies, National Assembly members, ACRC, investigative authorities, BAI, etc.
Informant	Anyone including foreigners	Anyone including foreigners
Disclosure	Report with real name	Report with real nam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the whistleblower's identity



ACRC request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involved



Disciplinary action &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Personal protection



Safe house

Escort

Keeping guard

Patrolling

Guarantee of employment

Prohibition of

- Disadvantage in employment status;
- Administrative disadvantage;
- Financial disadvantag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ction against whistleblowers & fine for negligence or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Mitigation of culpability

- Mitigation/remission of punishment
-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Rewards & Awards

	Reporting of corruption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wards	Up to 3 million USD , 4-30% of the assets to be recovered	Up to 3 million USD , 4-20% of the assets to be recovered
Relief money	Damage caused due to whistleblowing (since Oct. 17, 2019)	Damage caused due to whistleblowing
Awards	Bringing financial benefits or preventing financial damage, o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Bringing financial benefits or preventing financial damage, o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Achievements & Challenges



Achievements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ports

Year	Total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Reports submitted	28,288	292	1,153	2,887	9,130	5,771	2,511	2,521	3,923
Reports handled	27,927	227	1,113	2,509	8,239	7,089	2,560	2,238	3,952
Reports transferred	15,136	151	635	1,500	6,737	3,280	1,234	619	980

Investigation and handling results (2011-2018)

Offences confirmed	Prosecution or accusation	Imposing fines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or penalty surcharge
6,487	1,553	87	1,614

(Unit: No. of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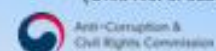


Achievements

Protective measure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Year	Total	Protective measures provided							Cases rejected	Cases dismissed	Cases withdrawn	Cases under examination
		total	Protective measures	Personal protection	Confirmation of identity disclosure	Remitting liability	Remitting liability	Remitting liability				
Total	183	61	28	13	8	2	10		44	8	48	22
2011	6	2	2	-	-	-	-		2	-	2	-
2012	9	3	1	1	-	-	1		2	1	3	-
2013	19	5	4	1	-	-	-		6	2	6	-
2014	14	7	1	2	3	1	-		4	-	3	-
2015	12	3	2	-	1	-	-		4	-	5	-
2016	20	7	5	1	1	-	-		6	-	7	-
2017	28	12	7	1	1	-	3		10	-	6	
2018	75	22	6	7	2	1	6		10	5	16	22

(Unit: No. of cases)



Achievements

Reward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Year	Requested	Handled (a+b+c)	Paid (a)	Dismissed (b)	Concluded (c)	Increase in revenues of public agencies	Amount of rewards paid
Total	9,197	9,101	5,982	738	2,382	91,227,754	6,827,264
2012	34	32	32	-	-	147,860	28,472
2013	1,153	487	319	168	-	1,230,929	227,708
2014	3,302	678	657	21	-	2,239,585	397,340
2015	1,164	1,154	511	81	562	1,988,445	345,997
2016	2,082	3,737	2,476	344	917	8,344,742	1,603,578
2017	853	2,316	1,710	63	543	11,198,923	1,976,511
2018	609	697	277	61	360	66,077,269	2,213,658

(Unit: No. of cases, US\$)



Challenges(Further Improvements)

Unification of laws
on whistleblower
protection

- Integration of provisions on protection of persons reporting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s

Establishment of
integrated reporting
systems

- Integration of separate reporting systems f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nvestigation agencies, private companies, lawmakers, etc.



